

소득세 비용공제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박 성 만 · 수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미국의 소득세 체계는 기술과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왔었다. 특히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세법상의 개념들이 정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세법이 교과서화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그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며 그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득세법의 비용은 거래나 업무(trade or business) 또는 소득의 산출(production of income)의 관련성(association)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수익산출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면서 비용이 통상적(ordinary and necessary)이고 필요한 것인가를 가린다.

셋째, 비용이 합리적이면서 과세기간에 지불되거나 발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이윤동기는 있었는가, 경제활동에 따른 비용지출의 지속성 내지는 정규성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가린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의 비용공제는 개념화 내지 체계화보다는 지엽적으로 세분화 또는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에 급급한 느낌을 면할 수 없다.

〈주제어〉 조세제도, 소득세

I. 서론

미국은 소득세제에 있어서 소득의 개념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실용주의 관점에 의거하여 회계학적 입장을 지지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법은 그 원천이 어떠한 간에 모든 형태의 소득을 의미하고 그 소득은 실현이 되므로 비로소 과세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응되는 공제제도는 어떠하며 그 논리는 무엇인지 우리의 공제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세제를 미약하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제에 있어서 무엇이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소득에 대한 공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공제제도가 달라지며 공제의 타당성 내지는 합리성이 기본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미국의 공제제도가 어떠한 논리 하에서 성립되는지를 조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를 그 일부이나마 공제개념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미국의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의 공제제도는 어떠하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소득 개념의 확립이 과세소득의 결정에 중요하듯이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역시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국소득세제의 공제제도의 원칙과 그 논리를 탐구함으로서 우리의 소득세제도를 발전시키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비용공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사례를 관련서적, 논문 및 법령집의 검토 등 문헌의 연구를 통하여 미국소득세제에 함축되어 있는 일반적인 비용공제의 기본사고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실용성 면에서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연구범위도 소득세비용공제에 관한 세부각론이 아닌 개관적인 연구에 국한한다. 문헌분석에 있어서도 미국의 소득세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국가의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본 논문의 외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II. 비용공제에 관한 개관

1. 비용공제의 정의

미국 소득세법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포괄적(all-inclusive) 개념인데 반하여 비용공제는 법에 의해서만 용인되는 특정비용, 손실 및 기타항목이다¹⁾. 이는 소득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느 항목도 공제될 수가 없다. 납세자는 공제에 대한 주장을 오직 법에 의존해서만이 행사할 수 있다²⁾.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를 보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있고, 역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 특정소득공제 및 소득특별공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합소득공제로 구성되어있다.

2. 비용의 공제

일반적으로 비용공제는 기업과 수익산출활동에서 발생된 것만 공제되고, 순전히 개인의 사사로운 경제활동에서 발생된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즉 생계비를 획득하기 위한 원가는 공제 될 수 있는 반면 생계비는 공제될 수 없다(The costs of earning a living are deductible while the costs of living are not)는 것이 내국세법의 기본입장이다.

가. 비용공제의 일반원칙

내국세법 §162는 거래 또는 업무상과 관련된 비용(trade or business expenses)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12는 소득산출(production of income)에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이 소득에 대한 비용공제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1) 내국세법 §161.

2) New Colonial Ice Co. v. Helvering. 4 USTC, p1292 AFTR 1180,54 S. ct788 (USSC, 1934).

(1) § 162의 개요

과세기간동안에 거래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모든 비용(all the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의 공제가 허용된다. 비록 내국 세법 § 162(a)에서 ① 실제로 제공받는 개인용역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대가라든가 ② 업무상 지출한 여비라든가 ③ 업무상 필요한 임차료나 기타 그와 유사한 지출액 3가지를 공제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일반조항이다. 즉 업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공제할 수 있다.

(2) § 212의 개요

이 조항도 § 162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개인의 경우 과세기간동안에 ① 소득의 산출 또는 회수(for the production or collection of income)와 ② 소득산출을 위해 보유한 자산의 관리, 보존 또는 유지(for the management, conservation, or maintenance of property held for the production of income)를 위해 지출되거나 발생한 모든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소득산출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료와 보관금고의 사용료와 같은 항목이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3) § 162와 § 212의 비용공제 요건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비용이 거래, 업무 또는 소득산출활동(carrying of a trade or business or an income-producing activity)에 관련되어야 한다.
- ②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ordinary and necessary).
- ③ 비용이 합리적이야 한다(reasonable).
- ④ 비용이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되었거나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paid or incurred during the taxable year).

나. 비용공제의 개론

앞에서 언급한 바의 비용공제 4가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1) 업무상 또는 소득산출활동과의 관련성

(가) 경제활동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는 부분적으로는 비용이 발생된 경제활동의 형태에 의존한다. 내국세법 §162는 비용이 거래나 업무(trade or business)를 구성하는 경제활동에 지출되었거나 발생된 경우에만 공제가 용인된다는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212는 비용이 소득의 산출이나 회수를 위한 경제활동에 지출되었거나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어떤 활동이 비용공제 가능한 경제활동인가 하는 것은 골동품의 수집이나 자동차 경주와 같이 주로 그 성격상 개인적인 (personal in nature) 것인가 아니면 이윤획득(activity for profit)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취미로 자동차 경주나 골동품 수집을 하더라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행한다면 그에 수반된 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³⁾.

(나) §162와 §212의 구분

미국에 있어서 §212의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투자와 관련된 비용들이 활동(a business)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에서 공제되지 못하였다. 1942년에 §212의 제정으로 소득의 산출이나 회수에 관련된 투자성 비용(investment-oriented expenses)의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12는 활동이 업무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 하더라도 단순히 소득의 산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에 대한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업무상의 비용이냐 아니면 투자소득산출을 위한 비용이냐 하는 구분은 공제의 성격 면에서 중요하다. 투자소득산출을 위한 비용은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공제가능하고 업무상비용은 소득계산 시 한도제한 없이 전액 공제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소득산출을 위한 비용은 내국세법의 여러 조항(예컨대, 자본이득과 손실 대 경상이익과 손실, 단기자본손실 대 일반손실 등)에서 공제의 제한을 받는다.

(다) 관련성

§162나 §212하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거래나 업무 또는 소득산출활동과의

3) Grier v. U.S., 55-1 USTC p9184, 46 AFTR 1536, 218 F. 2d 603(CA-2, 1955).

어떤 관련성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비용지출이나 발생이 거래 또는 업무에 혹은 소득 산출활동에 관련성 판단은 사실에 의존한다. 비용의 발생이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상 결과로서 발생하였다면 업무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비용항목의 공제여부는 그 비용이 업무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212의 경우는 비록 비용이 소득이 발생한 기간 이전에 발생되더라도 당기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2)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비용의 통상성이란 납세자가 관여한 업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비용은 관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다른 납세자들도 동일한 업종이나 소득산출을 하는 활동에서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는 것은 납세자의 이윤추구활동에 적합하여야 하거나, 도움이 되어야 하거나 또는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필요기준은 공제를 부인하는데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이천지출이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서 필요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현재 판단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3) 합리적인 비용(reasonable expenses)

세 번째의 공제요건은 비용이 금액 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내국세법 § 162(a)(1)에는 비용의 합리성이란 용어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위한 대가로 지불된 보상과 연동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회사와 관련해서 발생되는데 주주와 회사 사이에 있어서 회사가 과도히 지급한 급여나 임대료의 경우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을 배당으로 본다⁴⁾. 회사측에서 보면 배당과 급여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없느냐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

내국세법이 사용하는 비용의 합리성기준은 ① 수행한 임무(예, 금액과 책임의 성격 등)

4) Internal Revenue Reg. § 1.162-8

② 처리업무의 양과 복잡성(예, 소요시간) ③ 개인의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 ④ 주어진 직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인원 ⑤ 기업의 배당정책과 과거의 배당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4) 과세기간 동안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

지급(paid)이란 용어는 내국세법상 현금주의 회계(cash basis accounting)를 적용하는 납세자에 해당되고 발생(incurred)이란 용어는 발생주의회계(accrual basis accounting)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내국세법은 서비스업종의 개인이나 그러한 업종의 소규모법인들도 현금주의 체계를 많이 허용하고 있다. 비용은 실제로 지급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많은 제약이 있다.

(가) 현금주의 납세자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장부기록을 하더라도 채고자산이 소득산출의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세법은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채고자산의 원가는 자산처리 되어야 하고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이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되살려져야 한다.

또한, 법과 시행령(the Codes and Regulations)은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과 선급비용 등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제한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시행령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더라도 비용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과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부분 공제가 허용된다. 과세기간을 초과한다는 법원판례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임을 의미한다⁷⁾.

(나) 발생주의 납세자의 경우

발생주의 납세자는 비용이 발생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비용의 발생은 다음 두 가지 검증을 거쳐야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① 모든 사건에 대한 검증(all events test) : 채무의 존재를 확립시키는 모든 사건이

5) Internal Revenue Manual 4223, §232.

6) Reg. §1.446-1(a)(1).

7) Martin J. Zaninovich, 69 T.C. 605, rev'd in 80-1 USTC p9342(CA-9, 1980).

발생하여야 한다.

② 채무의 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건에 대한 검증은 재무회계상으로는 인정되는 특정추정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부인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제품보증, 보장, 그리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추정원가는 공제받지 못할 수가 있다. 아마도 세법상에서는 그러한 항목들은 확정되지도 않았었거나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법원은 그 채무가 확실하고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예, 산업계의 경험)가 있는 경우에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대한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행(economic performance)의 검증이다. 납세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즉, 채무를 발생시키는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비용공제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경제적 수행검증을 인정하였다.

납세자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경제적 수행이 이뤄져서 발생한다.

- ① 납세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채무 : 납세자의 채무가 3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야기될 때, 경제적 수행이 발생된다.
- ② 납세자에게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채무 : 납세자의 채무가 납세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재화 또는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지불의무로부터 발생될 때 경제적 수행이 일어난다.
- ③ 노동법이나 민사법에서 야기되는 보상지급에 대한 채무 : 채무가 노동법이나 민사법 하에서 타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발생될 때, 경제적 수행이 그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내국세법은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제될 수 있다.⁹⁾

- ① 모든 사건에 대한 검증이 충족되고
- ② 경제적 수행이 과세기간종료일 후 8과 1/2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상 발생하여야 하고
- ③ 그 항목이 성격상 반복적이고 납세자는 일관성있게 그러한 항목들을 과세기간에 발

8) Bell Electric Co., 45 T.C. 158(1965).

9) 내국세법 §461(h)(3).

생 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 ④ 그 항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 경제적 수행이 일어났을 때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수익에 대한 비용의 대응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이다.

(5) 종업원 업무비용(employee business expenses)

거래나 업무의 정의는 일개의 종업원으로서 각종 서비스의 수행도 포함한다.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그에 의해서 발생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비용으로서 §162하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야기한 비용의 전형적인 사례는 노조회비, 업무 및 전문직 관련 회비, 전문서적 정기구독료, 소형공구 및 소모품비, 작업복 및 제복비(유지비 포함) 등이다.

3. 비용의 분류

일단 어떤 항목의 공제가능성이 확립되면, 개인소득세 형식상 비용공제는 조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이나 아니면 조정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도 구분된다. 요컨대, 첫째는 비용이 공제가능한가? 둘째, 가능하다면 조정후총소득 계산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정후소득에서 공제할 것인가?(Is the deduction for or from adjusted gross income?)

가. 공제분류의 중요성

비용분류문제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s)는 기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개별공제는 기준공제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의 기회를 상실한다. 기준공제의 기초는 조정후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다. 이 조정후소득이란 모든 실현수익에서 관련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둘째, 개별공제 중에서도 기타개별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의 처리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986년 세법개정에서 기타개별공제는 조정후소득의 2%까지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용공제의 적합한 분류를 통하여 조정후소득계산이 보다 정확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구분이 중요하다.

나. 조정후소득계산을 위한 공제(deductions for adjusted gross income)

소득세법 §62는 구체적으로 조정후소득 계산을 위한 공제항목을 열거할 뿐이고 열거되었다하여 모두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거래나 업무비용(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용역은 제외)(a)(1)
- ② 인건비(a)(2). § 161, § 162
- ③ 자산처분손실(a)(3). § 161
- ④ 임차료 및 수수료(rents or royalties) 수입에 대한 비용공제(a)(4)
- ⑤ 종업원 연금비용(a)(6). § 404.
- ⑥ 개인사업자 연금비용(a)(7). § 219
- ⑦ § 402(e)의 일괄연금지급중 일부(a)(8)
- ⑧ 만기일이전 자금인출에 대한 부과금 (a)(9) § 165
- ⑨ 별거수당(alimony)(a)(10) § 215
- ⑩ 기타공제항목(a)(11),(12),(13). § 194. § 165.

다.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s)

앞에서 언급하듯이 조정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공제 항목은 개별공제에 비하여 숫자가 적으며 그대부분 개인사업 납세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모든 다른 비용들은 개별공제로서 조정후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

개별공제는 2가지, 즉 순수개별공제와 기타개별공제로 나누어진다. 기타개별공제는 조정후소득의 2%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요구된다.

(1) 순수개별공제

아래의 개별 공제 항목 중 거래나 업무(trade or business)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은 조정후 소득 계산을 위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① 이자 § 163
- ② 제세금 § 164

- ③ 재해손실 등 § 165
- ④ 대손상각비 § 166
- ⑤ 감가상각비 § 167, § 168, § 169
- ⑥ 의료비 § 213
- ⑦ 이주비 § 217
- ⑧ 기부금 § 170
- ⑨ 사채발행차금 § 170
- ⑩ 기타공제 § 215, § 173, § 174, § 175

(2) 기타개별공제

기타개별공제 항목들은 고용주로부터 보상되지 아니하는 종업원 업무비, 투자비용, 세무신고서작성비와 같은 세금에 관계되는 공제들이다. 이들 비용공제는 조정후 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된다.(§ 67(a))

항목 ①~⑧은 보상되지 아니하는 종업원 업무비용이다.

- ① 종업원 여비(숙박비 접대비포함)
- ② 종업원 교통비
- ③ 외판원 비용
- ④ 협회비
- ⑤ 전문직회비와 멤버십비용
- ⑥ 업계 저널 구독료
- ⑦ 구직비용(동일업종에서)
- ⑧ 근로자 교육비
- ⑨ 투자비(투자자문료, 금고사용료 등)
- ⑩ 세무대행비 및 자문비

기타 개별공제 중에도 장애 근로자에 대한 장애관련 업무비등은 2%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에 생명보험료, 뇌물, 통근비용, 개인적인 법률비용 등과 같이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도 있다.

다. 인적공제

내국세법 §151는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19세 미만, 학생 24세 미만), 장애자는 인적공제를 받는다.

라. 자가사업 대 종업원에 대한 비용

현재의 소득세법 구조하에서 비용의 구분(for and from A.G.I.)은 그것이 자가사업가의 비용인가 또는 종업원의 비용인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종업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비보상업무비(all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s)가 개별공제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 or partners)의 경우에는 조정 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공제된다.

개별비용공제는 특히 기타개별공제에 대해서는 조정 후 소득의 2%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이런 구분논리는 그 근거는 빈약하다. 미국 의회는 종업원의 업무비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고용주가 고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종업원에게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회는 이러한 제도가 납세자의 장부기록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청(IRS)의 징수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보상비용(reimbursed expenses)

종업원의 업무비로써는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개별공제로 공제된다.

종업원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소득에 포함되면, 공제는 조정 후 소득을 위해 공제 될 수 있다.

(2) 예술가들의 비용

대부분의 종업원의 업무비는 개별공제로 2% 한도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배우, 음악가, 댄서 등의 예술가들은 자가고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비용은 개별공제로서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정 후 소득을 위한 공제가 허용된다.

4. 요약

본 장에서는 미국 소득세법상의 비용의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체계로 정립하고 있다.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성격을 ① 업무 및 수익 창출 활동과의 관련성 ② 비용의 통상성과 필요성 ③ 비용의 합리성 ④ 비용의 과세기간 해당 여부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가지 항목마다 세밀한 내용이 담겨있어 납세자가 상식적으로 어떤 지출이 소득공제 가능한 지출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비교하면 이러한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이 우리의 세법에는 결여되어 있다.

비용의 분류에 있어서도 미국 소득세법은 체계적이다.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되는 비용과 조정후소득(adjusted income)에서 공제되는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s) 비용으로 다시 구분하고 다시 개별공제중에서 기타 개별공제항목(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을 선별하여 세무상의 비용인정을 달리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갖추고 있다.

Ⅲ. 비용공제 제한

미국 세법은 납세자의 업무나 이윤추구활동과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나 손실들의 공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실무상 특정영역에서 비용공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시행되어오고 있다.

1. 오락비와 손실(hobby expenses and losses)

내국세법 §183(b)(2)는 오락비와 손실의 공제를 그에 관련된 수익이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 한도를 기준으로 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이윤동기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공제받을 수 없다.

내국세법에는 이윤동기를 확인하는 몇 가지의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¹⁰⁾

가. 이윤동기 요인

- ① 그 활동이 업무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장부와 회계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② 납세자가 업무에 대하여 지식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는가?
 - ③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활동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는가?
 - ④ 여러 해에 걸쳐서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도 나기도 하였는가? 손실은 첫해에만 발생하였는가?
 - ⑤ 납세자가 다른 원천에서 부수적인 소득만을 가지고 있는가? 납세자의 부가이윤이 생기지 아니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
 - ⑥ 납세자가 그 활동에서 개인적이거나 또는 오락적 쾌락이 별로 없는가?
- 위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은 이윤동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나. 추정규칙(presumptive rule)

법원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연속 5년 중 3개년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오락비 경우의 입증책임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즉 이는 국세청이 반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가 이윤동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¹¹⁾

다. 공제한도

만약 활동이 오락으로 판단되면 관련비용은 그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서 그렇지 않으면 공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¹²⁾

10) 내국세법 Reg. §1.183.2(b).(1)~(9)

11) 내국세법 §183(d).

12) 내국세법 §183(b).

2. 생계비(personal living or family expenses)

내국세법 § 262는 어떤 사적인, 생활비 또는 가족경비의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내국세법 조항에서 규정된 것만 공제가 용인된다. 그러한 예는 의료비, 현금, 주택자금, 교육비, 이자와 세금이다.

이들은 개별공제항목으로 분류된다.

앞에서 오락비처럼 비용지출이 사적인가 아니면 이윤추구인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262에서 비용공제를 불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예. 임차료, 공공요금)
- ② 사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처분손실
- ③ 파혼배상금, 그와 관련된 변호사비용 등
- ④ 피보험자가 지불한 생명보험료
- ⑤ 개인주택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

생계비 중에서 의료비, 현금, 교육비, 이자 및 세금은 세법에서 특별히 취급하여 한도액이 계산되며 특히 현금금은 우리의 기부금처럼 한도액 계산이 복잡하다. 이들 항목은 비용각론에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3.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 지출이란 그 지출의 경제적 효력이 당해 과세기간을 초과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은 경제적 효력이 미치는 연도에 걸쳐서 상각한다.

가. 영업권

토지처럼 영업권은 내용연수로 결정할 수 없는 자산의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내용연수의 미결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세법에서는 영업권은 상각될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 의회는 영업권상각과 영업권의 확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 197을 제정하였다. 1993년 10월에 실시된 이 규정은 매입영업권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15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상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영업권은 자산처리되며 상각할 수 없다.

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와 자산가치의 증가로 가져오는 지출은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¹³⁾ 반대로 그 지출이 자산의 현상유지에 그치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된다.

도색비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자산의 전반적인 개조와 관련해서 도색이 되었다면 그 도색비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

다. 취득원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원가는 자본화되어야 한다.

내국세법 §164는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제세금은 자본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나 제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여 자본화된다.¹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거나 완전하게 하기 위한 비용들도 통상 자본화된다.

라. 자본화 또는 공제의 선택

내국세법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본적 지출을 당기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 예컨대 연구개발비는 납세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당기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연자산으로 60개월에 걸쳐 상각할 수도 있다.

4. 창업비와 개업비

기본원칙은 납세자가 그가 시작하거나 조사탐색하는 기업과 동일업종에 종사한다면 그러한 창업비와 개업비는 지급하였거나 발생한 연도에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1980년에 의회는 이러한 기본규칙이 논쟁의 소지도 있고 새로운 기업의 탄생은 어렵게 하기 때문에

13) 내국세법 §263(a).

14) Joseph M. Jones, 57-1 USTC p9517, 50 AFTR 2040, 242 F 2d 616(CA-5, 1957).

15) 내국세법 §174, 715 및 180.

특정조건 하에서는 이들 지출을 상각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가. 상각규정

내국세법 § 195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한 납세자로 실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한 납세자의 창업비와 개업비는 이연하여 60개월 내에 상각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만약 그가 그 기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연상각 할 수 없다.

나. 구직 비용(job-seeking expenses)

종업원의 구직비용의 세무처리는 기업의 창업비나 개업비의 세무처리와 비슷하다. 만약 납세자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종과 동일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비용지출을 하였다면 그 비용은 기타 개별공제항목으로 A.G.I.의 2%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¹⁶⁾

5. 공공정책상의 제한

비용이란 납세자의 이윤추구활동에 도움이 되고 온당하기는 하지만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될 경우에는 공제가 불허된다. 법원도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비용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벌을 희석시킴으로써 과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비용은 필요 경비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⁷⁾

1. 범칙금(fines and penalties)

법규위반으로 정부에게 납부한 범칙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¹⁸⁾ 법규의 범위는 납세자의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채무의 해결에 지불된 금액을 포함한다. 독과점금지법에 의해서 3배의 부과금은 1/3만 공제받을 수 있다. 2/3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¹⁹⁾

16) Rev. Rul. 75-120.

17) Tank Truck Rentals, Inc. v. Comm., 58-1 USTC p9366, 1 AFTER 2d 1154, 78 S. ct. 507(USSC, 1958).

18) 내국세법 § 162(f).

19) 내국세법시행령 § 162(e)

2. 뇌물, 상납 등의 불법지출

내국세법 § 162(c)는 다음과 같은 불법지출(illegal payments)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① 정부공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지불한 뇌물 등
- ② 부패방지법하에 외국 공무원에게 불법지출한 뇌물 등
- ③ 국내법을 위배하여 개인에 불법지출한 뇌물 등
- ④ 의료법하에 합법이라 하더라도 제공한 자의 수수료나 뇌물.

3. 불법기업의 비용

불법 소득은 소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기업과 관련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기업의 비용지급자체가 불법이면 공제가 부인된다.²⁰⁾

6. 로비와 정치헌금

로비와 정치헌금은 납세자의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의회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비용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제한이 지지를 받고 있다.

가. 로비

1962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체의 로비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의회는 1962년에 특정로비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입법사항에 대하여 정부직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이전에 나타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로비비용의 공제제한은 보다 엄격하여져서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비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신문이나 잡지에서 로비용 광고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주주에게 보내는 홍보물에서 입법활동에 로비를 가하도록 부추기는 홍보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²¹⁾

20) James Alex, 70 T.C. 322(1978).

나. 정치헌금

내국세법 §276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헌금하는 것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행정부가 정치과정에 있어 있을 수 있는 남용과 부당할 영향력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용지출에 대한 유리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었다.

7. 요약

비용의 소득에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공히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 목적상 비용공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오락비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업무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개인의 긴장 해소차원인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결정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오락비는 한도적용을 받는다. 내국세법은 개인생활비는 비용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비, 헌금, 주택자금이자와 세금은 비용으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적 지출은 경제적 효력이 미치는 연도에 걸쳐서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 및 뇌물 등은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용공제로 허용되지 않는다. 로비와 정치헌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헌금의 세무상 처리와 판이한 차이가 존재한다.

IV. 우리나라의 비용공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의 비용을 필요경비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손금의 용어는 필요경비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본 장에서는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비용공제에 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21) 내국세법 Rul. 74-407.

1.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기업회계에 비용의 인식 원칙인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한 비용의 성격을 통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²⁾

가.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

이 원칙은 비용이란 수익활동과 관련해서 인식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제 35조 2호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계학에서 비용의 인식은 수익과의 인과성(cause and effect),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systematic and reasonable allocation), 즉시상각(immediate write-off)이다. 인과성을 따져서 비용인식을 하는 형태를 직접대응(direct matching)이라고 하고 나머지 2가지 형태는 기간대응 또는 간접대응(periodic or indirect matching)이라 일컫는다. 직접대응의 실례로는 매출과 매출원가이며, 간접대응의 실례로서 대부분의 관리비와 판매비가 여기에 속한다.

나. 대법원의 수익대응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필요경비를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판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 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 13호의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은 총수입금액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주장²³⁾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는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이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결에 있어서 사업소득자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고 그 수입이 실현된 이후에 수입한 금전 이외의 것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되

22) 소득세법 27조

23)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 14418 판결.

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당초의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의 규모가 크고(39매)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거래의 회수와 거래의 형태를 비추어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서 비록 골프회원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회원권거래로 입은 결손금의 발생도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²⁴⁾

따라서 대법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기본견해는 수익과의 직접관련성을 주장하고 있고 사업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들고 있다.

다. 세법에 있어 필요경비

소득세법 27조는 필요경비의 인식을 수익과 대응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 39조 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 하여 수익과 비용의 기간 귀속을 권리확정주의로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동39조 3호에서는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17조 제 1항에서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여기의 확정이란 용어는 권리확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⁵⁾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간접대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비용이 확정된 날에 비용을 기간귀속 시켜야 한다. 이렇게 귀속된 비용은 특정수익에 직접대응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전 기간에 걸친 총수익의 획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경비의 요건으로 수익과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주장한다. 이는 대법원의 사업성에 있어서 판단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을 연관시킬

24) 대법원 1997.10.14. 선고 96논 14746 판결.

25)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2판), p280.

수 있는 것이다.

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은 발생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총 수입에 대응하여 용인하고 있다. 나아가서 총수입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것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고 있다.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하여 비용을 발생주의에 근거한다면 비용이 발생은 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고, 자연 소득금액 산출에 왜곡과 자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에 있어서 권리 확정주의를 취하듯 비용에 대해서도 확정주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⁶⁾.

한편 소득세법 제 188조의 2 및 부가세법 제 32조의 3의 ④항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로 설치·사용하는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현금주의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정규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들만 제외하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²⁷⁾.

2. 필요경비의 범위²⁸⁾

99 귀속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국세청이 인정한 영수증의 수취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가. 일반원칙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음의 거래증빙서가 있어야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26) 이태로, 「조세법 강의」 박영사, 1997. p273.

27) 박성만, “소득세법에 있어서 과세기간과 현금주의회계”, 수원대 기업경영연구소 논집 6집, pp142~143.

28) 소득세법 시행령 § 55.

나. 예외인정

- 거래건당 100,000원(부가세포함) 미만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의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의 경우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의 이유로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필요경비의 항목

- (1) 매출원가(매입할인과 예누리는 제외하고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가산)
- (2) 산림취득비(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등)
- (3) 잠업종의 경비 및 가축비(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등)
- (4) 종업원 급여
- (5)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관리유지비 및 임차료, 손해보험료)
- (6)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형에 의하여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제외
- (7) 퇴직보험이나 의료의 보험료
- (8) 지급이자
- (9) 대손금
- (10) 매출할인액 및 장려금
- (11) 재해손실
- (12) 직장체육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 (13) 광고선전비, 소비성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의 2% 한도
- (14) 조합비 및 협회비
- (15) 학자금
- (16) 이연자산의 상각, 개업비는 3년, 시험연구비는 5년 균등액 이상 상각.
- (18) 각종 충당금과 준비금

이렇게 세법은 비용항목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지녀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기부금과 접대비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란 점에서 접대비와 상이하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우리세법에서 여러 종류로 나눈다.

가. 기부금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한도액이 계산되는 지정기부금,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한도액이 계산된다. 우리는 정치헌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미국은 정치헌금은 비용공제 불허되며 이점이 우리와 판이하다.

나.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향응, 위안, 선물의 제공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바 접대비에 대하여는 먼저 필요경비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의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도 사업장별 또는 접대지역별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은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이 접대비는 경우가 미국의 세제와 판이하다. 미국은 일반원칙에 합당하면 비용으로 용인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이미 신용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접대비는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업무능력을 우선시하는 미국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4.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가.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2%를 초과하는 광고비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수입금액계산은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하며, 해외 광고지출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아 한도액계산에서 제외한다.

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과세소득에서 일정기준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배려하여 과세함으로써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영세소득자를 신고대상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납세행정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3가지가 있다.

(1) 기본공제²⁹⁾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20세미만 60세이상) 1인당 1백만원이 공제된다.

(2) 추가공제³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대상자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1인당 50만원이 공제된다.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³¹⁾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백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이 공제된다.

나. 특별공제(항목별공제)³²⁾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되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한다.

29) 소득세법 50조 ①항.

30) Ibid. 51조 ①항.

31) Ibid. 52조 ②항.

32) Ibid. 52조 ②항.

이 특별공제제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60만원)가 적용된다.

미국은 재해 및 도난 손실이나 연방 소득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은 소득세 신고서 공제 받는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에서 다음 항목들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1)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 인력³³⁾

근로소득자로서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현장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년 2,400만을 한도로 근무년수에 따라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다.

(2) 개인저축에 대한 소득공제³⁴⁾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년 72만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에 일정비율을 공제받는다.

(3)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³⁵⁾

납세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년도 72만을 한도로 불입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다.

(4)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³⁶⁾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초소득발생년도와 그 후 3년기간에 한하여 축산업소득 금액의 20%를 공제받는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국가 정책적 결정에서 생겨난 산물로서 국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33) 조세특례법 19조.

34) Ibid. 86조.

35) Ibid. 96조.

36) Ibid. 101조.

6. 기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³⁷⁾

- 가.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 나. 벌금·과료와 과태료
- 다.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채납처분비
- 라. 가사와 관련된 경비지출
- 마. 부가가치세대입세액 불공제액
- 바. 법정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7. 요약

우리나라의 비용은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라 일컫고 필요경비의 일반적인 개념정립이 없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존재하여야 비용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공제는 너무나 외형을 중시하고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용항목의 일반성을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한도액 계산을 적용받는데 그 계산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일반납세자는 세무계획을 설정할 수 없으며 조세행정이 편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신용카드사용을 권유하는 조세행정은 편의주의의 표본이다.

V. 결론

소득에 대한 비용공제에 관한 미국세법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개념정정이 미국세법은 법과 판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납세자가 공제되는 비용인지 아닌지를 기업활동 당초부터 판단할 수 있게끔

37) 소득세법 §33.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개념을 업무상의 필요경비로만 규정하여 납세자의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의 개념의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건별 규정을 확인함으로써 비용의 공제여부가 판가름난다.

둘째로, 미국의 소득에 대한 비용공제는 모든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그 소득의 생성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비용이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세법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물론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공제가 인정 안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사회적·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분야는 접대비, 기부금 및 정치헌금이다. 사실 미국세법은 접대비를 복잡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상 정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면 한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접대비사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조치는 조세행정의 편의성에 그 원인이 있다. 기부금의 경우도 미국은 친족이나 정치 또는 로비활동에 관한 지출을 제외하고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는 복잡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고 있다. 사실 정치자금 또는 로비자금으로 기부한 지출은 미국처럼 비용공제부인을 하는 것이 공정경쟁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로, 근로자의 특별 공제항목으로 도난 손실과 소득세를 제외한 여타의 세금 비용은 미국처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항목들은 납세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미국의 소득세법상의 비용공제제도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의 시사점이 존재한다. 우선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개념화를 포괄적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의 인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손실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소득만 계상하려는 현 세법체계는 납세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소득을 누락시키고 비용을 과대계상하려는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한도계산은 너무 복잡하여 납세자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추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을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는 소득세법체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경제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 「소득세법해설」, 2000
- 김광윤, 「세법원론Ⅰ」, 박영사, 1996
- 김광윤, 「세법원론Ⅱ」, 박영사, 1996
- 김선규, 「조세법강의」, 등용문출판사, 1999
- 김영식, 이효서, 임찬엽, 「세법개론」, 신영사, 1998
- 이만우, 「세법」, 박영사, 1999
- 이영우, 「세법개론」, 세경북스, 1999
- 이태노,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8
- 최태규, 김덕진, 「세법개론」, 비전, 1999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미성인쇄, 1999
- , 「법인세기본통칙」, 국세청, 1997
- , 「소득세기본통칙」, 국세청, 1997
- 한국조세연구원, 「미국의 세법」, 1994. 8.
- ,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11.
- Hoffmen, Willis, Smith, (1989) Individual Income Taxes, WEST.
- James W, Pratt, William N, Kulsrud, (1995) Individual Taxation, IRWIN.
- Patrick R. Delaney, (1997) CPA vol 1, Wiley
- , (1997) CPA vol 2, Wiley
- Samuelson, Nrodhans, (1985) Economics, Mcgraw Hill.

A Study On the Expense Deductions of Individual Income Tax in the U.S.

Sung-Man Park

The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essor

U.S. tax system has been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built as technologies and industries have developed.

Especially basic concepts in tax laws have been so well arranged by the courts for tax laws themselves to be almost converted into textbook.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considered expense concept important as well as income concept.

The features of expense are as follows.

1. Expenses should be associated with trade or business or production of income.
2. Expenses should be ordinary and necessary in matching with income.
3. Expenses should be reasonable and be paid or occur during tax period.

U.S. Court judges what satisfy thes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economic activity, motives of profit, and the continuance or regularity of expense. However our tax law about expense is minor and temporary rather than systematic.

〈Key Word〉 Tax system, Income Tax